

2023~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

1. 제안이유

우리구의 지역여건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본방향

-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의 행정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 운용
- 지속적인 기능전환·쇠퇴부분 발굴·조정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인력운용의 건전성 제고
-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인력 운용
-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·운용

나. 주요내용

1) 정원관리 기관별, 직종·직급별 인력 배치계획

가) 정원관리 기관별

구 분	2021년 (12월말)	2022년 (8월말 기준)		2023년		2024년		2025년		2026년		2027년	
	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
합 계	1,172	1,184	+12	1,204	+20 ¹⁾	1,204	-	1,204	-	1,204	-	1,204	-
본 청	804	811	+7	827	+16	827	-	827	-	827	-	827	-
의회사무국	26	29	+3	32	+3	32	-	32	-	32	-	32	-
보 건 소	92	96	+4	97	+1	97	-	97	-	97	-	97	-
동주민센터	250	248	△2	248	-	248	-	248	-	248	-	248	-

1) ① 17명 : 22.10월 증원완료(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' 관련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배정인력)

② 3명 : 23.1월 증원에정(지방의회 정책지원관_23년도 기준인건비 배정(예정)인력)

☞ 2023년 기준인건비 확정 통보(예정) 결과에 따라 '순증' 또는 '기존 정원 내 상계 조정' 여부 재검토

나) 직종·직급별

구 분	2021년 (12월말)	2022년 (8월말 기준)		2023년		2024년		2025년		2026년		2027년		
	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정원	증감	
계	1,172	1,184	+12	1,204	+20	1,204	-	1,204	-	1,204	-	1,204	-	
정 무 직	1	1	-	1	-	1	-	1	-	1	-	1	-	
일반직	소계	1,168	1,177	+9	1,197	+20	1,197	-	1,197	-	1,197	-	1,197	-
	5급이상	61	62	+1	62	-	62	-	62	-	62	-	62	-
	6급이하	1,105	1,113	+8	1,133	+20	1,133	-	1,133	-	1,133	-	1,133	-
	전문경력관	2	2	-	2	-	2	-	2	-	2	-	2	-
별정직	소계	3	6	+3	6	-	6	-	6	-	6	-	6	-
	5급상당	1	1	-	1	-	1	-	1	-	1	-	1	-
	6급상당	1	2	+1	1	△1	1	-	1	-	1	-	1	-
	7급상당 이하	1	3	+2	4	+1	4	-	4	-	4	-	4	-

2) 기능별 정원 증원 내역

구분	부서명	업무명	내용	인력 증원					
				계	23년	24년	25년	26년	27년
계				20	20	-	-	-	-
읍면동 (일반행정)	동주민센터 (10개 동)	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	동 주민자치 전담인력	9	9	-	-	-	-
읍면동 (사회복지)			동 현장복지 인력	8	8	-	-	-	-
의회	금천구의회	정책지원관	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	3	3	-	-	-	-

3) 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1. 12.31	2022년		2023년		2024년		2025년		2026년		2027년		
		금액	증감											
순계세입모	145,103	157,867	+12,764	167,632	+9,765	176,674	+9,042	186,626	+9,952	197,358	+10,732	200,968	+3,610	
자체수입	계	145,103	157,867	+12,764	167,632	+9,765	176,674	+9,042	186,626	+9,952	197,358	+10,732	200,968	+3,610
	지방세	105,061	117,530	+12,469	125,066	+7,536	133,919	+8,853	143,514	+9,595	153,908	+10,394	157,157	+3,249
	세외수입	40,042	40,337	+295	42,566	+2,229	42,755	+189	43,112	+357	43,450	+338	43,811	+361
	지방채	-	-	-	-	-	-	-	-	-	-	-	-	-
기준인건비 편성액	107,101	110,161	+3,060	114,567	+4,406	119,150	+4,583	123,916	+4,766	127,634	+3,717	131,463	+3,829	

※ 2023년~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

4) 민간위탁 계획 ※ 개관시기 도래 시 행정환경 변화 고려 위탁운영 여부 재검토 후 추진(예정)

위탁계획 년도	시설물명	사업기간	사업비 (백만원)	규모
2023년	-			
2024년	금천청년꿈터	24.1월~	8,155	- 위치: 독산동 331-27, 28(독산1동) - 규모: 연면적 1,360㎡(지하1~지상9층) - 주요시설: 청년창업단체 입주·공유공간, 회의실 등
	구립벌하어린이집	24.3월~	6,930	- 위치: 가산동 148-30 - 규모: 연면적 687㎡(지상1~3층) - 시설내용: 국공립어린이집
2025년	-			
2026년	-			
2027년	-			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나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관계법령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3조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이하 "기본인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,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·운영하여야 한다.

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제3조(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·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2.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
3.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4.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(公社)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